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34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용혜인 · 이수진 · 한창민
전종덕 · 정혜경 · 황명선
염태영 · 김종민 · 이광희
손 솔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

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5항

까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동반자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 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생활동반자”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어 생활동반자 본인을 말한다.
4. “생활동반자관계 상대자”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어 생활동반자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가정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할 때에 있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한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동반자관계 관련 사무의 관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② 대법원장은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은 구청장,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2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제7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능력) ①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제8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①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은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②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제9조(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생활동반자관계는 제10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조(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의 신고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은 당사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1조(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연월일

2.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 신고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제12조(외국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 및 영주권자 사이에 형성된 생활동반자관계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동반자관계 신고의 수리) ① 생활동반자관계 신고는 그 생활동반자관계가 제8조, 제10조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의 장은 생활동반자관계 신고를 수리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동반자관계의 무효) 생활동반자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이 경우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생활동반자관계의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제16조(생활동반자 간의 의무) 생활동반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동반자 간의 가사대리권) ① 생활동반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제1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생활동반자관계 신고 시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생활동반자관계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또는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동반자 간의 재산관계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9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생활동반자관계 성립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20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21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생활비용) 생활동반자관계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23조(입양)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은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다.

- ②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의 자녀를 상대자가 입양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녀를 입양해 발생하는 친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제909조의 양부모와 같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제24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사유) 생활동반자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소된다.

- 1.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는 경우
- 2.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 3.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4.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 5.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

제25조(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① 제2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② 제24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성립 또는 발생한 즉시 효력이 생긴다.

제26조(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의 신고) ① 제24조제1호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② 제24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을 서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3호 또는 제5호까지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사건의 신고로 갈음한다.

④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생활동반자관계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와 자의 양육책임) ①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함께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나이와 양육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상대자·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다른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28조(재산분할청구권) ①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제29조(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자는 「민

법」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민법」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0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31조(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생활동반자관계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생활동반자관계의 형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④ 등록부와 제3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부등과 전산정보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 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

부 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 등)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로 발급한다.

1. 당사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상대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현재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일부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일부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34조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⑥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활동반자를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⑧ 시·읍·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의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인터넷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①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상대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7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사람
3. 제35조제1항·제6항, 제36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생활동반자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생활동반자관계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39조(벌칙)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생활동반자 혹은 생활동반자였던 사람

제28조제2항 본문 중 “배우자”를 “배우자·생활동반자”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배우자”를 “배우자·생활동반자”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람 및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가목 중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람 및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을 “혼인 여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등 여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장가입자의 생활동반자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항 중 “배우자”를 “배우자, 생활동반자”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와 같이 본다.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혼인”을 “혼인, 생활동반자관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혼인”을 “혼인 및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의”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생활동반자”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부모, 자녀”를 “부모, 생활동반자, 자녀”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혼인”을 “혼인 및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으로 한다.

⑩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1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 및 생활동반자”로 한다.

⑪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친족”을 “친족, 생활동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을 “가족, 생활동반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 등”을 “가족 등(생활동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⑫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부로서”를 “부부거나 3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하는”을 “하거나 1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 있는 사람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으로 한다.

제9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② 부부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한 쪽이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또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중의 출생자로 본다.

③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 또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일방이 그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 또는 생활동반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생활동반자”로 한다.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및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⑮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혼인관계 및 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로서”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로서”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생

활동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 생활동반자 또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가”로 한다.

⑰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연령”을 “가족형태, 연령”으로 한다.

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혼인관계 및 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⑲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직계존속을”을 “직계존속, 생활동반자를”로, “직계존속이”를 “직계존속, 생활동반자가”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직계존속, 생활동반자, 형제자매”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나타내는”을 “나타내거나 환자의 생활동반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생활동반자관계임을 나타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나타내는”을 “나타내거나 환자의 생활동반자가 생활동반자관계임을 나타내는”으로 한다.

⑳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배우자”를 “배우자, 생활동반자”로 한다.

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사목 중 “가족”을 “가족(생활동반자를 포함한다)”으로, “유족”을 “유족(생활동반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부터 아목까지를 다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나. 생활동반자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등은”을 “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활동반자를 말한다)은”으로 한다.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실혼 관계”를 “사실혼 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한다.

⑤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의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사실상의 혼인 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사실상의 혼인 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로 한다.